

 국토교통부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
	배포일시 2019. 4. 10.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공항안전환경과	담 당 자 • 과장 방현하, 사무관 김세연, 주무관 이서영 • ☎ (044) 201-4347, 4354, 4355	
보 도 일 시	2019년 4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4. 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

- ◆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장애물제한표면(OLS) 국제기준 개정 추진
- ◆ 국토부,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...국내 제도개선 기반 마련
- ◆ 22년까지 개정안 마련, 24년 발효, 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

□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*)는 공항주변 고도제한(장애물제한표면 : OLS)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,

*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(회원국 192개)

-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 표면(OLS) TF 회의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, 2024년에 발효,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였다.

□ 사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, 우리 정부의 제안('13.5월 ICAO 아태지역 워킹그룹 회의)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된 것으로서,

-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ICAO 전담조직(이하 TF)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해왔으며, 이와 병행하여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령 개정,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·운영,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절차를 수행하여 왔다.

* 공항시설법(구 항공법) 개정('15.6월) :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 예외 적용 가능

-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 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.
- 그러나,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계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한 바,
 - 우리나라는 ICAO의 계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해야 하므로,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.
- 한편, 현행 장애물제한표면(OLS)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(OFS)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(OES)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,
 - 향후 TF 추가 논의, 항행위원회 심의, 계약국(192개) 의견 조회,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,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 안전환경과 김세연 사무관(☎ 044-201-435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